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8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오현정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기덕, 김태호,
봉양순, 송명화, 유정희,
이광성, 최웅식, 황인구
의원(9명)

1.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한 보훈대상자중, 아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훈대상자를 감면규정에 포함하여,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대상자를 예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한 보훈대상자중,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20조제1항9호~13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의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 ④ (생 략)</p>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10.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1.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2.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13.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1080800000004
------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오현정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8.08	
회신일 : 2021.08.09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요금의 감면)제1항제9호~제13호 신설에 따라 도시공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의 입장료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나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안 제20조(요금의 감면)제1항제9호~제13호 신설에 따라 도시공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의 입장료 면제에 따른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대상자들의 도시공원 방문횟수를 파악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참고 1] 안 제20조제1항제9호~제13호의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 현황

구분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국군포로	역류지출신 포로가족
대상자	8,458명	39,644명	4,404명	3,839명	16명	112세대

자료 : 국가보훈처(유공자 현황, 2021.6월말 기준), 국방부(국군포로 및 포로가족 현황, 2021.7월말 기준)

[참고 2] 도시공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입장료 현황

공원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서울대공원	동물원	어른 1회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입장료에 시설 이용료를 포함하거나 기업 및 단체와 협약에 따라 입장료나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기획상품 등은 공원관리청이 따로 할인요금을 정할 수 있다.
		청소년 1회	3,000	
		어린이 1회	2,000	
서울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른 1회	5,000	
		청소년 1회	3,000	
		어린이 1회	2,0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른 1회당	2,000	
		청소년 1회당	1,500	
		어린이 1회당	1,000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